

검정대행기관 [] 지정
[] 재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검정대상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4. 검정의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